환경분쟁조정제도

☐ 환경분쟁조정제도

-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.
-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,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,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,
-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,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
☐ 신청대상

- 사업활동,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, 수질오염, 토양오염, 해양오염 및 소음.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상·재산상의 피해분쟁
- 환경시설(폐기물처리시설, 하수종말처리시설, 분뇨처리시설 등)의 설치.관리와 관련된 분쟁
-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
-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
- 일조·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의 분쟁

▢ 조정(調整)의 종류

구 분	정 의	처리기간
중재(仲裁)	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, 사실 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	9월
재정(裁定)	사실조사 및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	9월
조정(調停)	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	9월
알선(斡旋)	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	3월

▢ 조정(調整)업무별 처리기관

- **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(☎ 044-201-7969)**
  -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(裁定)
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/조정/알선
  - 2이상의 시·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/조정/알선
  -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
  - 중앙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무
  -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
- **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인천시 생활환경과 032-440-8583)**
  - 당해 시·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의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(다만, 일조방해, 통풍방해,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은 제외)
  - 당해 시·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/알선